

반인권 악법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한상렬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

보안관찰법 불복종 한상렬 목사 석방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4.8.26(월) 오전 10시

장소 : 전주지방검찰청 앞

주최단체

노동자연대전북모임 (사)더불어아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연합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예수살기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김제,익산,전주] 통합진보당전북도당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이상 22개 단체)

반인권 악법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한상렬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

보안관찰법 불복종 한상렬 목사 석방촉구 기자회견

어제(25일) 밤, 통일운동가인 한상렬 목사가 보안관찰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에 의해 완산경찰서에 조사를 받은 후 자정이 넘어 덕진경찰서에 입감되었다. 그동안 한상렬 목사는 보안관찰법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았지만 양심과 사상, 신념을 감시당하도록 하는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겠다는 입장으로서 신고를 거부해 왔다. 우리는 한상렬 목사의 보안관찰법 불복종을 지지하며 검찰이 즉각 한 목사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전주지방검찰청 앞에 모였다.

보안관찰법은 박정희 독재 정권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이 그 시초이며 1989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되었으며 보안관찰제도가 신설되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가 될 경우 자신의 향후 거취 등을 거주 예정지역의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인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선 법원 판결이 없이도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게 된 피보안관찰자는 3개월마다 자신의 주요 행적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은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사생활 전반에 관여하며 한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시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를 법무부가 법원의 판결 없이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또한 보안관찰법은 과거 일제의 사상범보호관찰법의 취지와 형식을 그대로 닮은 법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전향’이라는 용어가 있는 등 사상범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 등과 같이 이른바 특정 사상 관련 정치 범죄를 특별히 처벌하고 사상 전향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기도 하다. 한상렬 목사는 부당한 억압과 악법에 저항하는 평화운동가와 통일운동가의 삶을 살아왔기에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는 보안관찰법에 따를 수 없다고 밝혀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구인을 한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또한 우리는 야간에 이뤄진 과도한 공권력 집행 역시 규탄한다. 경찰이 체포를 시도하던 당시 시간은 밤 9시경이었으며 한상렬 목사는 병원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던 상태에서도 굳이 야간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도적인 고려 없는 행태였으며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다. 게다가 한상렬 목사가 변호인, 지인들과 체포영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차에 탑승한 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소방차를 출동시키고는 119 구조대가 차량을 강제로 열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다. 경찰에 의해서도 할 수 있던 일을 굳이 소방서에 연락을 한 것에 대해 연대하는 시민들을 비롯해 주민들도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에서 그와 같은 대응은 하지 못하면서 한명을 구인하기 위해 그만큼 인력을 동원한게 말이 되냐는 한 시민의 발언이 어젯밤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 우리는 현장에 완산경찰서장이 나와 있던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 분노하며 향후 이 같은 과도한 공권력의 대응에 대해 서장을 비롯한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한상렬 목사에 대한 체포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공안정국 조성 시도로 여기며 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세월호 유가족인 김영오씨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이 40일이 넘게 계속되자 음해와 '신상털기' 식의 미확인 사생활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 국정원이 김영오씨의 고향인 정읍에서 신상을 캐묻고 주치의도 확인하는 등 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유가족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대선개입 이후 또 다시 국정원이 국내에서 음흉한 공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검찰이 공안탄압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하여 한상렬 목사에 대해 과도한 체포를 시도했다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 정치권이 책임을 회피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침묵한 채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또 다시 공안몰이라는 구태의연한 카드를 꺼내든다면 시민들은 분노할 것이며 우리 역시 그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사상과 양심으로 인해 이중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주의라 할 수 없으며 그것에 불복종한 것은 범죄 행위일 수 없다. 우리는 반인권 악법인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는 한상렬 목사와 연대하겠다. 또한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는 보안관찰처분이 중단되고 보안관찰법이 폐지되기 위해 싸워갈 것임을 밝힌다.

한상렬 목사 체포를 규탄한다! 즉각 석방하라!

사상과 양심에 대한 감시의 족쇄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2014. 8. 26.

한상렬 목사 석방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